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및 「경상북도과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 제정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각각 변경하고,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7. ~ 1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7명”을 “6명”으로, “3명, 6급 2명”을 “2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총계 “337”을 “334”로 하고, 일반직 계 “333”을 “33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35”를 “34”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3”을 “52”로 하며, 행정주사보 “15”를 “14”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40”을 “337”로 하고, 일반직 계 “336”을 “33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37”을 “36”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3”을 “52”로 하며, 행정주사보 “16”을 “1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4”를 각각 “6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1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78”을 각각 “872”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41”을 “139”로 하며, 행정주사보·공

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67”을 “168”로 하고,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09”를 “207”로 하며,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82”를 “179”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지방보훈청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북동부보훈지청 및 전북서부보훈지청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제19조제1항 관련)

1. 지방보훈청

명 칭	관할구역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마포구·서대문구·강동구·송파구·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김천시·구미시·경산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청도군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강진군·장흥군·해남군·완도군

2. 보훈지청

지방보훈청	소속 보훈지청	관할구역
서울 지방보훈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강남구·서초구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안양시·과천시·안산시·평택시·오산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화성시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광명시·김포시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
	경기동부보훈지청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용인시·안성시·이천시·여주시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원주시·화천군·양구군·홍천군·인제군·철원군·횡성군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정선군·평창군·영월군
부산 지방보훈청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남동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창녕군·의령군·함안군
	경남서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통영시·남해군·하동군·고성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산청군

대전 지방보훈청	충남서부보훈지청	충청남도 보령시·서산시·당진시·태안군·홍성군·예산군·청양군·서천군
	충남동부보훈지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공주시
	충북남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
	충북북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음성군·괴산군·증평군
대구 지방보훈청	경북북부보훈지청	경상북도 안동시·영주시·문경시·봉화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예천군
	경북남부보훈지청	경상북도 경주시·포항시·영천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광주 지방보훈청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라남도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보성군·고흥군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광군·진도군·함평군·신안군·영암군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무주군
	전북서부보훈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군산시·정읍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7명</u> (4급 2명, 5급 3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u>6명</u> ----- <u>2명, 6급 1명, 7급 1명</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37</u>	<u>334</u>	-3
·	·	·	
·	·	·	
일반직 계	<u>333</u>	<u>330</u>	-3
·	·	·	
·	·	·	
행정사무관	<u>35</u>	<u>34</u>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53</u>	<u>52</u>	-1
·	·	·	
·	·	·	
행정주사보	<u>15</u>	<u>14</u>	-1
·	·	·	
·	·	·	

[별표 5]

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0</u>	<u>337</u>	-3
·	·	·	
·	·	·	
일반직 계	<u>336</u>	<u>333</u>	-3
·	·	·	
·	·	·	
행정사무관	<u>37</u>	<u>36</u>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53</u>	<u>52</u>	-1
·	·	·	
·	·	·	
행정주사보	<u>16</u>	<u>15</u>	-1
·	·	·	
·	·	·	

[별표 6]

국립대전현충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4</u>	<u>63</u>	-1
일반직 계	<u>64</u>	<u>63</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 통신서기보	<u>8</u>	<u>7</u>	-1
·	·	·	
·	·	·	

[별표 18]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8</u>	<u>872</u>	-6
일반직 계	<u>878</u>	<u>872</u>	-6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	<u>141</u>	<u>139</u>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u>167</u>	<u>168</u>	+1
·	·	·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209</u>	<u>207</u>	-2
·	·	·	
·	·	·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 보·공업서기보·시설서 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182</u>	<u>179</u>	-3
·	·	·	
·	·	·	